

대통령령 제 호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연 100분의 34.9”를 각각 “연 100분의 24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,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연 100분의 34.9”를 각각 “연 100분의 24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이자율의 제한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8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”이란 <u>연 100분의 34.9</u>를 말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<u>연 100분의 34.9</u>를 단리로 환산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9조(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)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”이란 <u>연 100분의 34.9</u>를 말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<u>연 100분의 34.9</u>를 단리로 환산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. 이 경우 <u>연 100분의 34.9</u>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	<p>제5조(이자율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연 100분의 24</u>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<u>연 100분의 24</u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) ① ----- ----- - <u>연 100분의 24</u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연 100분의 24</u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연 100분의 24</u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서민금융과	
연 락 처	02-2100-2612